

공사입찰설명서 (긴급)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77호

공사명: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3), 공사 관련은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_____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 정 금 액	34,032,532,944 원	입찰개시일시	2026. 09. 30.(수) 10:00
기 초 금 액	26,262,000,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07.(수) 12:00
추 정 가 격	23,874,545,455 원	개 찰 일 시	2026. 10. 07.(수) 13:00
부 가 가 치 세	2,387,454,545 원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7,770,532,944 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입찰집행관 PC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517,467,056원

* 추정가격에 기술사용료 포함(19,924,205원)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 금지면 상귀리 일원

1-2 공사규모: 확포장공사 L=7.73km, B=9.5m(본선부), L=0.5km, B=10.75m(상귀마을), 교량 7개소, 출입시설 6개소(평면교차로) 등

※ 세부내역: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800일(공휴일 포함)

1-3-1 1차분 예정(기간/계약금액): 50일/100,000,000원

* 낙찰률 및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차수분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1-4 공사유형/공사구분: 신설공사/종합공사(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 본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신설공사로서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안함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금34,032,532,944원(100%)

1-6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협약권자	비고
특허 제10-0872822호	대칭 또는 비대칭 정착블럭이 구비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우경건설(주)	
특허 제10-0566653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거더교의 중간지점부 연속화 구조 및 연속화방법	우경건설(주)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이며,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2-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5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정국(063-280-4393)**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7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금7,604,123,755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2-8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1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등록자로서,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입찰(계약)금액의 49%(대표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 비율 이상이어야 함) 이상 공동으로 입찰(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1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4 공동수급체는 5개업체 이하로 합니다.

3-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

3-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자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의 규정에 의합니다.

3-4-3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본 종합공사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3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약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4-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 → 검색 → 공고번호-차수 → 시설 입찰공고 상세’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3-2 나라장터의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3-3 투찰금액과 제출 산출내역 금액 상이, 전체 산출내역서 및 표준시장단가 산출내역서 상이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사유가 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금23,874,545,455원	100%

6-2-1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6-2-2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2-3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times \frac{2}{3}$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times \frac{1}{2}$)

6-3 입찰가격 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합니다.

6-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준율: 기타경비 3.77%, 일반관리비 4.99%, 이윤 8.01%, 노무비 40.93%
- 난이도계수: 1.00(E등급)

*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미확정공종(P.S, 잠정금액)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금액(단가)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5 적격심사평가 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6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2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6-7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6-8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9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10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제출 요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8-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8-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7,604,123,755	356,663,009	269,937,582	172,699,983	35,469,798	357,570,200	1,045,287,195	424,087,421	4,942,408,567

9-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4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9-5-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6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9-7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9-8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2-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약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12-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2-4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2-5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2-5-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2-5-2 낙찰자는 발주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2-6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4-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4-5 기타 문의 사항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3\)](tel:063-280-4393)
 - 입찰공고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도 회계과(063-280-2333)로,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누리집(<https://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